#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대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348

발의연월일: 2021. 1. 13.

발 의 자: 박대수 · 박성민 · 양정숙

정찬민 · 서범수 · 김형동

정동만 · 지성호 · 김성원

홍석준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공항, 백화점, 대형마트 등과 같은 대형사업장에서 직원의 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소규모의 휴식공간만을 제공하는 등 근로자 휴식공간이 열악한 실정임.

근로자의 휴식공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령인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은 사업주에게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그기준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고, 그 법률상 근거규정이 '근로자의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'한 추상적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휴게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더라도 현행법상으로는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실정임.

이에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사업주에게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고 그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령에 명시적으로 위임하는 한편,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

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건강권을 보호 하려는 것임(안 제141조의2 및 제175조제4항제7호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장제2절에 제1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41조의2(휴게시설의 설치)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사업주의 범위와 휴게 시설의 설치기준은 사업장의 규모, 사업장 내 상주하는 근로자의 수 와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175조제4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의2. 제141조의2를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휴게시설을 설치 한 자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41조의2(휴게시설의 설치)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사업주의 범위와 휴게시설의 설치기준은 사업장의 규모, 사업장 내 상주하는 근로자의 수와 업무의 성격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
제175조(과태료) ① ~ ③ (생략)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~ 7. (생략) <신 설>	로 정한다.         제175조(과태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        ④

	휴게시설을 설치한 자
8. (생 략)	8. (현행과 같음)
⑤ ~ ⑦ (생 략)	⑤ ~ ⑦ (현행과 같음)